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 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기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 일반직

가. 지방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나.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다. 가, 나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만 55세 이상인 자.

2. 별정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지방의회의원 4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위원회소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타 위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과 의회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협의를 절차) ①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협의를 있어야 한다. 단,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 대상자가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 등을 제시받아 심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